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609

발의연월일: 2025. 2. 28.

발 의 자: 강대식 • 박준태 • 고동진

김상훈 · 조지연 · 유용원

임이자 · 김용태 · 주호영

이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, 육군3사관학교의 2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또한, 제3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, 급여, 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, 2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1억원이 넘음.

그러나, 최근 들어 육군·해군·공군사관학교 및 제3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명이 넘어가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제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

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학비,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(안 제10조신설).

법률 제 호
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(양성비용 상환) ① 사관학교에 입학한 자(수탁생도는 제외한다)가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(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·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) 외의 사유로 퇴교한 경우에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, 급여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(이하 "양성비용"이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.
 -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양성비용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 - ③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(수업료,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)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양성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.
 -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양성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양성비용 상환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0조(양성비용 상환) ① 사관학
	교에 입학한 자(수탁생도는 제
	외한다)가 3학년까지의 교육과
	정을 이수한 후 신체적 또는
	정신적 장애(본인의 고의 또는
	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・정신
	적 장애는 제외한다) 외의 사
	유로 퇴교한 경우에는 재학 중
	에 지급받은 학비, 급여 및 그
	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
	일부(이하 "양성비용"이라 한
	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	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.
	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
	<u> 상환의무자가 양성비용을 상환</u>
	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
	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	③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
	교의 등록금(수업료, 그 밖의
	납부금을 포함한다)을 감안하
	여 제1항에 따라 상환하여야
	하는 양성비용을 산정하여야

<u>한다.</u>

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양성비용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 시하여야 한다.